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46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31.
3. 회 부 일 : 2025. 1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도 60세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 없이 정년이 도달하기 직전 2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공무원·교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해 짧고, 연구역량이 축적된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 시간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총액 인건비 체제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여 우수 연구인력이 대기업, 해외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정년 이후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2조의3(정년 등) ① 연구기관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로 한다.</u> <u>②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원(정년에 도달한 연구원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년 이후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재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개별 기관의 인사규정 등에서 각각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15년 이후부터 각 연구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0조¹⁾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 제4항²⁾에 근거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음.

-
- 1) 제10조(임금피크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 등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정년연장기관 :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
 2. 정년보장기관 :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
-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매년 설정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며, 별도정원은 별도직군 정원으로 반영하거나 초임직급 정원으로 반영한다. 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정원 중 일부는 별도직군 정원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초임직급 정원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별도직군 방식: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기존 직급에서 제외하여 별도직군의 현원으로 관리
 2. 초임직급 방식: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기존 직급의 현원으로 관리
- ⑤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은 기관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신규채용 목표 인원의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설계한다.
-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목표 초과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허용하고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한다.
- ⑦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능력 및 기관별 직위·직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위·직무를 개발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동기 부여와 직무 등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차등이나 직무급, 역할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⑧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정원 내 인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정년이후 재고용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도래 전에 정원 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없다.
- ⑨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연도의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⑩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총인건비에 관하여 예산편성지침상 인상률의 1/2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 ⑪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신규채용 규모 및 별도정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설계안과 별도정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⑫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금피크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 등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제21조(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④기타공공기관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임금피크제를 준용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연구기관은 정년퇴직 후 1차연도에는 10%, 2차 연도에는 15~20%의 임금 감액률을 적용함.

<기관별 임금피크제 실시 개요>

기관명	임금조정기간	임금감액률	
		1차년도(만59세)	2차년도(만60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년	△10%	△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년	△10%	△20%
국토연구원	2년	△10%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년	△10%	△20%
산업연구원	2년	△10%	△15%
에너지경제연구원	2년	△10%	△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년	△10%	△20%
통일연구원	2년	△10%	-20%
한국개발연구원	2년	△10%	-20%
한국교육개발원	2년	△10%	△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년	△10%	△15%
한국교통연구원	2년	△10%	△20%
한국노동연구원	2년	△10%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년	△10%	△20%
한국법제연구원	2년	△10%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년	△10%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년	△10%	△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년	△20%	△1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년	△10%	△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년	△10%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년	△10%	△15%
한국행정연구원	2년	△10%	△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년	△10%	△15%
한국환경연구원	2년	△10%	△15%
건축공간연구원	2년	△10%	△20%
KDI국제정책대학원	2년	△10%	△20%
육아정책연구소	2년	△10%	△15%

주: 임금감액률 적용방법은 기관별로 일부 상이함. 예를 들어 총연봉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기관,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기관 등이 있음(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법률에 규정하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년 연장에 따른 재원 부담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연구기관의 정년을 교수 등 대학의 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면 우수 연구인력이 대학이나 해외 기관으로 이직하지 아니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1960년에는 2.9%였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26년에는 21.6%에 달하고, 2072년에는 47.7%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³⁾되므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됨.
-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상황⁴⁾에서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 간 괴리가 발생하여 소득공백기(income crevasse)가 장기화되고 있어, 노인 빈곤 문제의 대응 측면에서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의의가 있음.

3) 통계청 인구상황관에서 발췌함. 중위연령의 경우에도 1960년 19세였으나 2026년에는 47.3세, 2072년에는 63.4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4)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부칙에 따라 1953년~1958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부터는 65세가 지급연령임.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생략)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 정년은 61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 정년은 60세로 운영하고 있어 소속 연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임.⁵⁾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법체계적 측면에서 연구자 정년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임.

헌법에서 그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원처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법률에서 직접 그 정년을 규정하는 사례는 많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도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기관별 인사규정 등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임(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205651,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2208120)

<법률에서 정년을 규정하는 사례>

법률	대상	정년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60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60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62세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65세
감사원법	감사위원	65세
	원장인 감사위원	70세
검찰청법	검찰총장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	63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60세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	60세
군무원인사법	군무원	60세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장	58세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	56세
군인사법	계급별 규정(원수~하사)	중신~40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경호공무원(5급이상)	58세
	경호공무원(6급이하)	55세
도선사법	도선사(수급상황을 고려 3년 연장 가능)	65세
법원조직법	대법원장, 대법관	70세
	판사	65세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 직원	60세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60세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	60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원	65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치경찰공무원	60세

- 둘째, 정년연장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개정안은 정년연장에 따른 재원 문제를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해 경감시키고자 하나, 매년 100명 이상의 인력이 정년연장으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건비의 추가 소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향후 신규 직원 채용이나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 억제 등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구성원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정년예정자 규모 추정: 2028~2034년(60세 기준)>

(단위: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계
인원	106	103	112	134	132	115	114	816

주: 기관별 정년퇴직 적용 시점은 대상자 생일 기준, 연도말, 반기별 등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셋째, 경제인문사회 소관 대부분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하여 정년연장 대상자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정년을 적용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용 중이고, 이 중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정년퇴직 대상자 전원이 재고용되었음
(참고자료 참조).

즉, 최근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0세 정년퇴직 대상자 423명 중 실제 퇴직한 사람은 127명(30%)에 불과하고 나머지 296명은 정년 후 재고용 제도(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을 유지하였음.⁶⁾

<최근 5년 간 정년연장 현황>

(단위: 명, %)

연도	60세 정년퇴직 대상 (A=B+C)	실제 정년퇴직(B)		정년 후 재고용 (C)	
		인원	비율(B/A)	인원	비율(C/A)
2021	90	17	19	73	81
2022	70	28	40	42	60
2023	79	23	29	56	71
2024	103	25	24	78	76
2025	81	34	42	47	58
계	423	127	30	296	7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년연장은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에 기여하여 우수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 각 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의 연구성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함으로써 연구성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규칙'에 의하면 퇴직자 고용 제도는 최소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 평가가 우수하고 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 평가가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후 최소 1년, 최대 5년까지 고용할 수 있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정안은 제2항에서 각 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만 정년연장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므로 실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할 때 기관 내 구성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다섯째, 개정안 부칙 제2조⁷⁾의 경과조치는 정년연장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조치로서 2009년 「국가공무원법」 개정⁸⁾ 당시 공무원 등의 단계적 정년연장을 위한 경과조치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 중인 59~60세 직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임금피크제를 계속 적용할지 여부 또는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기존 임금을 환급할지 여부 등 정년연장 직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여섯째, 현재 국회에서 정년연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7) 제2조(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정년은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62세, 2030년부터 2031년까지는 63세, 2032년부터 2033년까지는 64세, 2034년부터는 65세로 한다.

8) 부칙 (법률 제9113호) ②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있으므로 그 추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봄.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우수연구자의 유지·확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정년 차이에 따른 사기 저하 문제의 해소 등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국회의 정년연장 입법논의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9

【참고자료 1】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기관명	기간	조정비율		임금조정방식	도입
		1차년도	2차년도		
연구회	2년	-10%	-20%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80%	2015.09
과학	2년	-10%	-20%	· 1차년도 : (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80%	2015.11
국토	2년	-10%	-20%	· 1차년도 : (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80%	2015.11
건축	2년	-10%	-20%	· 1차년도 : (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적용(±1%))×90% · 2차년도 : (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적용(±1%))×80%	2015.11
대외	2년	-10%	-20%	· 1차년도 : (만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만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80%	2015.09
	2년	-10%	-20%	· 1차년도 : (만58세 분기별 고과평가 성과총합)×90% · 2차년도 : (만59세 분기별 고과평가 성과총합)×80%	
산업	2년	-10%	-15%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85%	2015.10
에너지	2년	-10%	-20%	· 1차년도 : (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80%	2015.11
정보	2년	-10%	-20%	· 1차년도 : (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9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80%	2015.10
통일	2년	-10%	-20%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80%	2015.10
KDI	2년	-10%	-20%	· 1차년도(정년퇴직 전년도) : (59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정년퇴직 당해연도) : (60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80%	2015.09
대학원	2년	-10%	-20%	· 1차년도(정년퇴직 전년도) : (기본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정년퇴직 당해연도) : (기본연봉×정부인상률)×80%	2015.09
교육	2년	-10%	-15%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 × 90% · 2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 × 85%	2015.10

기관 명	기 간	조정비율		임금조정방식	도입
		1차 년도	2차 년도		
평가원	2년	-10%	-15%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95% · 2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70%	2015.11
교통	2년	-10%	-20%	· 1차년도 기본연봉×90% · 2차년도 기본연봉×80%	2015.10
노동	2년	-10%	-15%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85%	2015.11
농촌	2년	-10%	-20%	· 1차년도 : (58세 계약연봉+처우개선) × 90% · 2차년도 : (58세 계약연봉+처우개선) × 80%	2015.10
법제	2년	-10%	-20%	· 1차년도(정년퇴직 전년도) : (59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정년퇴직 당해연도) : (60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80%	2015.10
보건	2년	-10%	-15%	· 1차년도: (58세 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58세 연봉×정부인상률)×85%	2015.11
육아	2년	-10%	-15%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 × 90% · 2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 × 85%	2015.09
여성	2년	-10%	-15%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85%	2015.11
조세	2년	-10%	-20%	· 1차년도 : (58세 계약연봉×정부인상률) ×90% · 2차년도 : (58세 계약연봉×정부인상률) ×80%	2015.09
직능원	2년	-10%	-15%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9세 총연봉×정부인상률)×85%	2015.10
청소년	2년	-10%	-15%	· 1차년도(정년퇴직 전년도) : (59세, 총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정년퇴직 당해연도) : (60세, 총연봉×정부인상률)×85%	2015.10
해양	2년	-10%	-15%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85%	2015.10
행정	2년	-10%	-20%	· 1차년도 : (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58세 기본연봉×정부인상률)×80%	2015.10
형사	2년	-10%	-15%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 × 90% · 2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 × 85%	2015.10
환경	2년	-10%	-15%	· 1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90% · 2차년도 : (58세 총연봉×정부인상률)×85%	2015.11

【참고자료 2】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에 따른 계속고용 현황

(단위: 명, %)

기관명	연도	정년퇴직	실제 정년퇴직(B)		정년 후 재고용 (C)	
		대상(A=B+C)	인원	비율(B/A)	인원	비율(C/A)
총 계	2021	90	17	19	73	81
	2022	70	28	40	42	60
	2023	79	23	29	56	71
	2024	103	25	24	78	76
	2025	81	34	42	47	58
	5년 계	423	127	30	296	7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	-	-	-	-
	2022	1	-	-	1	100
	2023	1	1	100	-	-
	2024	1	1	100	-	-
	2025	-	-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7	3	43	4	57
	2022	10	6	60	4	40
	2023	9	1	11	8	89
	2024	8	1	13	7	88
	2025	9	1	11	8	89
국토연구원	2021	1	-	-	1	100
	2022	1	-	-	1	100
	2023	4	-	-	4	100
	2024	7	1	14	6	86
	2025	7	-	-	7	100
산업연구원	2021	14	1	7	13	93
	2022	3	0	0	3	100
	2023	8	1	13	7	88
	2024	6	-	-	6	100
	2025	2	1	50	1	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3	-	-	3	100
	2022	-	-	-	-	-
	2023	-	-	-	-	-
	2024	2	-	-	2	100
	2025	-	-	-	-	-
산업연구원	2021	14	1	7	13	93
	2022	3	-	-	3	100
	2023	8	1	13	7	88
	2024	6	-	-	6	100
	2025	2	1	50	1	50

기관명	연도	정년퇴직	실제 정년퇴직(B)		정년 후 재고용 (C)	
		대상(A=B+C)	인원	비율(B/A)	인원	비율(C/A)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5	-	-	5	100
	2022	4	2	50	2	50
	2023	5	3	60	2	40
	2024	4	-	-	4	100
	2025	1	1	100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6	1	17	5	83
	2022	1	-	-	1	100
	2023	1	-	-	1	100
	2024	4	-	-	4	100
	2025	3	-	-	3	100
통일연구원	2021	1	-	-	1	100
	2022	-	-	-	-	-
	2023	2	1	50	1	50
	2024	4	1	25	3	75
	2025	-	-	-	-	-
한국개발연구원	2021	5	2	40	3	60
	2022	10	8	80	2	20
	2023	4	-	-	4	100
	2024	11	5	45	6	55
	2025	12	10	83	2	17
한국교육개발원	2021	3	3	100	-	-
	2022	1	1	100	-	-
	2023	2	2	100	-	-
	2024	3	3	100	-	-
	2025	3	3	100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	-	-	-	-
	2022	4	4	100	-	-
	2023	6	6	100	-	-
	2024	6	6	100	-	-
	2025	7	7	100	-	-
한국교통연구원	2021	-	-	-	-	-
	2022	1	-	-	1	100
	2023	9	3	33	6	67
	2024	2	-	-	2	100
	2025	2	-	-	2	100
한국노동연구원	2021	3	-	-	3	100
	2022	5	-	-	5	100
	2023	2	-	-	2	100
	2024	7	-	-	7	100
	2025	1	-	-	1	100

기관명	연도	정년퇴직	실제 정년퇴직(B)		정년 후 재고용 (C)	
		대상(A=B+C)	인원	비율(B/A)	인원	비율(C/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3	-	-	3	100
	2022	4	-	-	4	100
	2023	2	-	-	2	100
	2024	1	-	-	1	100
	2025	1	-	-	1	100
한국법제연구원	2021	-	-	-	-	-
	2022	2	2	100	-	-
	2023	2	2	100	-	-
	2024	1	1	100	-	-
	2025	-	-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	-	-	-	-
	2022	6	-	-	6	100
	2023	2	1	50	1	50
	2024	2	-	-	2	100
	2025	4	-	-	4	1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3	-	-	3	100
	2022	4	-	-	4	100
	2023	5	-	-	5	100
	2024	2	-	-	2	100
	2025	3	-	-	3	1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	-	-	1	100
	2022	2	1	50	1	50
	2023	1	1	100	-	-
	2024	3	2	67	1	33
	2025	1	1	100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	7	-	-	7	100
	2022	-	-	-	-	-
	2023	2	-	-	2	100
	2024	6	-	-	6	100
	2025	4	-	-	4	1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	-	-	-	-
	2022	-	-	-	-	-
	2023	-	-	-	-	-
	2024	2	1	50	1	50
	2025	-	-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5	2	40	3	60
	2022	-	-	-	-	-
	2023	2	-	-	2	100
	2024	3	1	33	2	67
	2025	6	2	33	4	67
한국행정연구원	2021	2	-	-	2	100
	2022	2	1	50	1	50
	2023	-	-	-	-	-
	2024	5	1	20	4	80
	2025	1	-	-	1	100

기관명	연도	정년퇴직	실제 정년퇴직(B)		정년 후 재고용 (C)	
		대상(A=B+C)	인원	비율(B/A)	인원	비율(C/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1	-	-	1	100
	2022	-	-	-	-	-
	2023	1	-	-	1	100
	2024	2	-	-	2	100
	2025	-	-	-	-	-
한국환경연구원	2021	4	2	50	2	50
	2022	4	1	25	3	75
	2023	1	-	-	1	100
	2024	4	-	-	4	100
	2025	9	4	44	5	56
건축공간연구원	2021	-	-	-	-	-
	2022	-	-	-	-	-
	2023	-	-	-	-	-
	2024	-	-	-	-	-
	2025	-	-	-	-	-
KDI국제정책대학원	2021	2	2	100	-	-
	2022	1	1	100	-	-
	2023	-	-	-	-	-
	2024	-	-	-	-	-
	2025	-	-	-	-	-
육아정책연구소	2021	-	-	-	-	-
	2022	1	1	100	-	-
	2023	-	-	-	-	-
	2024	1	1	100	-	-
	2025	3	3	100	-	-